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관련 판례 동향*

정재현**

〈요 약〉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선고된 교육세와 관련한 판례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수집된 교육세 관련 판례는 모두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과 관련된 사례였다. 이중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과 관련된 사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경영 사업 수익, 대출 채권 매각손익, 기타 과세표준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금액과 관련한 사례의 순으로 수집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원은 2009년 이전 연도에 귀속되는 평가손익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나 이후 연도에 귀속되는 통화파생상품의 평가손익과 거래손익은 서로 통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또한 통화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법원은 교육세 납세의무자를 형식적인 법률상의 지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와 수익금액의 원천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경영 여부에 따라 과세를 달리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셋째, 법원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내부이익 중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채권의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명확하게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넷째, 법원은 보험계약이 유지되어도 보험금의 실제 지급에 의한 책임준비금의 감소는 보험료 수익에서 공제되는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반대로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고 소멸한 책임준비금은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다섯째, 법원은 자동화기기 이용자가 지급하는 수수료는 금융기관에게 귀속되는 수익이라고 판단하였다.

〈주제어〉 교육세, 금융·보험업자, 판례동향

* 본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jhjung@dau.ac.kr

I. 서 론

교육세는 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이다. 또한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개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주세액의 일정 비율을 세율로 하여 추가하여 부과되는 부가세(surtax)이다. 교육세는 우리나라의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¹⁾ 세무학의 주요 연구대상이 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교육세 납세의무자들의 조세불복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선행연구들도 교육세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교육세의 조세불복의 주요 대상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 부과분이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판례들 모두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과 관련된 사례였으며, 선행연구들 역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과세되는 교육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교육세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목적세임에도 주요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와의 관련성이 낮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교육세와 관련된 판례들을 검토하여 최근 교육세와 관련된 판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최근 교육세와 관련된 판례를 검토한 결과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 겸영사업 수익, 대출채권 매각손익, 기타 과세표준에서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금액과 관련된 순으로 판례의 빈도가 높았다. 특히 2021년 대법원 선고에 의하여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내려졌다.

교육세와 관련한 연구는 실무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교육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위하여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선고된 교육세와 관련된 판례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주요 쟁점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교육세와 관련된 판례들을 검토하여 쟁점들을 객관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판례의 빈도를 통하여 쟁점들의 중요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으며, 법원의 판단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II.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관련 규정 및 현황

1. 금융·보험업자 관련 교육세 규정

가. 납세의무자

교육세법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

1) 교육세 징수액은 2020년 기준 4.7조원으로 국세 징수액 대비 1.6%를 차지한다. 최근 10년간 징수액도 국세 대비 1.6%~2.3% 정도로 비중은 낮은 편이다.

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²⁾ 교육세는 교육재정의 마련을 위한 목적세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부가세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는 국내에서 금융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열거된 납세의무자에 한한다.³⁾ 현행 규정상 열거된 금융·보험업자는 다음과 같다.

〈표 1〉 금융·보험업자의 범위⁴⁾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 포함)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11.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영업자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같은 법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 포함)

이만우 외(2006)에 따르면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금융·보험업자가 추가된 것은 금융·보험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교육세를 부과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만우 외(2006)와 이용호 외(2006)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금융·보험업자가 포함된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맞지 않고,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과 일치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교육세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목적세임에도 금융·보험업자와 교육세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선행연구의 지적과 같이 교육세의 혜택과 납세의무자와의 관련성이 낮아 수익자부담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2) 「교육세법」 제1조.

3)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4)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별표].

나. 과세표준과 세율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수입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매각 또는 상환금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 금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⁵⁾ 「교육세법 시행령」에서는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⁶⁾을 규정하면서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⁷⁾도 동시에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규정된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⁸⁾

<표 2>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⁹⁾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	과세표준에 제외되는 수익금액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및 환위험회피비용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포함)과 외환매매손익(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포함)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 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법인세법」 제42조의 익금으로 보지 않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4. 휴면예금의 소멸시효 완성익 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6.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7.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출재이익수수료·이제조사비

5)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6)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7)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8) 과세표준 관련 규정 외에 비과세 수익으로 금융·보험업자가 하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교육세법」 제4조).

9)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표 2〉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	과세표준에 제외되는 수익금액
	8. 특정 금융·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한 수수료 9.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시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10.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 11. 신용카드발행자와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다른 경우 가맹점 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2. 한국수출입은행이 수입한 보증료, 무역어음 재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13.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대출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과 관련된 규정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과 제외되는 수익금액을 동시에 열거하고 있어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많은 판단을 요하게 된다. 이용호 외(2006)는 교육세 과세표준은 금융·보험업자간의 불공평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같은 취지로 전병욱(2014)은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에는 손익의 통산을 인정하는 수익금액과 통산을 인정하지 않는 수익금액이 혼재하여 과세상 차별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정재현(2013)은 열거방식은 과세표준 산정에 어려움을 주며, 열거된 과세표준이 소득 개념이 아닌 수익금액 자체이므로 세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하였다.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선행연구의 지적과 같이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며, 납세의무자가 제기하는 조세불복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교육세 관련 판례는 모두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과 관련된 사례였다.

다. 교육세 징수 현황

교육세의 과세표준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개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주세액으로 구분된다.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따라 0.5%~30%의 세율이 적용된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는 0.5%, 개별소비세액에는 30%(프로판, 천연가스, 유연탄, 담배는 제외, 등유, 중유, 부탄은 15%), 주세액에는 10%(주세율 70% 이상인 주류 또는 맥주의 경우 30%), 교통·에너지·환경세액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표 3〉 교육세 세원별 징수세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교육세 징수세액 대비 %)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교육세 징수세액	4,692,746	5,109,935	5,097,573	5,007,139	4,879,230
국내분	4,351,873 (92.74%)	4,765,087 (93.25%)	4,727,444 (92.74%)	4,624,570 (92.36%)	4,513,711 (92.51%)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	1,138,172 (24.25%)	1,276,765 (24.99%)	1,091,525 (21.41%)	958,865 (19.15%)	950,828 (19.49%)
개별소비세	440,309 (9.38%)	454,844 (8.90%)	545,154 (10.69%)	602,357 (12.03%)	462,923 (9.49%)
주세	733,269 (15.63%)	843,651 (16.51%)	787,805 (15.45%)	744,681 (14.87%)	812,901 (16.66%)
교통·에너지·환경세	2,040,123 (43.57%)	2,189,827 (42.85%)	2,302,960 (45.18%)	2,318,667 (46.31%)	2,287,059 (46.87%)
수입분	340,873 (7.26%)	344,848 (6.75%)	370,129 (7.26%)	382,569 (7.64%)	365,519 (7.49%)

교육세의 최근 5년간 징수세액은 매년 5조원 내외로 전체 국세 대비 1.6~2% 정도를 차지한다. 교육세 징수세액은 2016년(4.9조원)부터 2019년(5.1조원)까지는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에는 4.7조원으로 감소하였다.

교육세 징수세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통·에너지·환경세액에 추가되는 금액으로 교육세 징수세액의 43%~47%를 차지한다. 이 중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따른 징수액은 전체 교육세 징수세액의 19%~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에 추가되는 징수액에는 미치지 못하나 국내분 교육세 징수세액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III. 선행연구의 검토 및 판례의 수집

1. 선행연구의 검토

교육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의 대부분은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
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교육세의 세원별 징수액에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하는
교육세 징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 아니나 가장 개선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만우 외(2006)와 이용호 외(2006)는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과되는 교육세 납세의무는 조세 공평의 원칙과 수익자 부담의 원칙 등에 위배되며, 교육세를 부담하고 있는 금융기관에도 불형 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하였다.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과되는 교육세는 수익과 부담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목적세로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금융·보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이유로 교육세를 부과한다는 관점에서 교육세 과세대상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일치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정재현과 최기호(2012)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금융세제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교육세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먼저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납세의무를 열거함에 있어 법령의 개정과정에서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과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고려하여 교육세 납세의무자 선정에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과세대상 수익금액과 과세제외 수익금액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 과세표준 산정시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정재현(2013)은 열거주의에 따른 납세의무 규정 방식과 일관성 없는 납세의무자 선정으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과세표준 산정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과세표준을 법인세 법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포괄주의 소득개념의 도입을 위해 결손과 필요경비도 함께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전병욱(2014)은 증권회사의 과중한 과세와 거래유형 간의 과세형평을 위해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매매거래시 발생하는 거래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에서 통화파생상품의 평가손익 규정과 관련하여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며, 부가가치세와 이중과세의 문제점이 있는 항목들은 교육세율을 조정하거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등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전병욱(2017)은 교육세 과세여부를 다룬 금융기관의 통화파생상품평가손익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였다. 통화파생상품의 평가손익에 대하여 통산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였던 과거 교육세법 규정에 따른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법령해석의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였다.

교육세의 문제점을 제기한 선행연구들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에 부과하는 교육세 제도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조세형평의 측면에서 납세의무자 선정과 과세표준 산정과정에서의 불합리함을 주로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최근 10년 동안의 교육세와 관련한 판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판례의 수집

교육세와 관련한 최근 판례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세법령정보 시스템에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신고된 판례를 수집하였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상하급심 정리를 한 후 최종 수집된 사례는 모두 30개이다. 수집된 판례를 주요 쟁점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교육세 사안별 판례 건수

구 분	판례 건수(%)
통화과생상품 평가손익	12건(40%)
겸영 사업 수익	6건(20%)
대출채권 매각손익	4건(13.33%)
기타 과세표준 제외 수익	4건(13.33%)
기타 과세표준 포함 수익	4건(13.33%)
합 계	30건(100%)

교육세 관련 판례 30건은 모두 금융·보험업자와 관련된 사례로 다른 납세의무자와 관련된 사례는 없었다. 수집된 판례 중 통화과생상품 평가손익과 관련된 사례가 12건으로 가장 많이 수집되어 전체 사례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겸영 사업과 관련된 수익이 6건, 대출채권 매각손익과 관련된 판례가 4건 수집되었다. 기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과 관련된 사례와 기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과 관련된 사례가 각각 4건 수집되었다.

교육세와 관련된 주요 쟁점은 금융·보험업자와 관련된 것으로 수집된 판례의 대부분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과 관련된 과세표준의 산정과 관련한 것이었다. 이하에서는 판례의 사안별로 판례의 동향과 시사점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IV.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관련 판례의 동향

1. 통화과생상품 평가손익

가. 관련 규정

최근 교육세와 관련된 판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통화과생상품의 평가손익에 대한 사례였다. 「교육세법 시행령」에서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으로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및 환위험회피비용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포함)과 외환매매손익(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포함)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을 규정하고 있다(「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해당 규정은 여러 차례 개정된 바 있는데 최근의 개정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개정 과정

2009년 이전	2010년~2011년 2분기	2011년 3분기~2013년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5의2. 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의 파생상품거래의 손익과 해당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 5의3. 금융·보험업자의 파생결합증권거래의 손익과 해당 파생결합증권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	5. 외환매매익 5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의 파생상품거래의 손익과 해당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 5의3. 금융·보험업자의 파생결합증권거래의 손익과 해당 파생결합증권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 외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은 제외한다] 매매손익 나. 파생상품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 5의2. 삭제 <2011.7.14> 5의3. 삭제 <2011.7.14>
	[대통령령 제22046호, 2010.2.18.]	[대통령령 제23022호, 2011.7.14.]
2014년	2015년~2020년	2021년 이후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 외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은 제외한다] 매매손익 나. 파생상품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표 5〉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개정 과정 (계속)

2014년	2015년 ~2020년	2021년 이후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손익을 포함한다)
[대통령령 제25206호, 2014.2.21.]	[대통령령 제26076호, 2015.2.3.]	[대통령령 제31455호, 2021.2.17.]

2009년 이전 시행되던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16호로 개정되기 전)에서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으로 외환매매익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이후 2010년부터 2011년 2분기까지 시행되던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16호)에서는 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는 부분을 삭제하여 외환매매익이라고만 규정하였다. 이후 2011년에 시행(2011.7.14. 대통령령 제23022호)된 「교육세법 시행령」에서는 외환매매손익과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 거래에 따라 발생한 손익을 서로 합산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2014년에 시행(2014.2.21. 대통령령 제25206호)된 규정에서는 파생상품등의 범위에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를 추가하여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하였다.

2015.2.1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에서 통화파생상품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나타나게 되었다. 개정을 통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과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이 파생상품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에 포함되었다. 2021년에 시행(2021.2.17. 대통령령 제31455호)된 시행령에서는 화폐성외화자산과 부채의 평가손익이 외환매매손익의 범위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나. 법원의 판단

2021년 선고된 대법원 판례(2021.9.16. 선고 2017두68813)에서 통화파생상품 평가이익의 과세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시가 있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세법 시행령」 규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의 귀속시기를 구분하여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의 귀속연도에 따라 시행 규정을 해석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였다.

해당 판례에서 대법원은 2010년 개정 전후의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에는 ‘외화현물’뿐만 아니라 통화선도·스왑을 비롯한 ‘외화파생상품’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2009년 이전 연도에 귀속되는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의 경우 2010년 개정 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가 명시적으로 ‘외환매매익’에서 ‘외환평가익’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 제외)’에는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따라서 2009년 이전에 발생한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실은 이를 2010년 개정 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포함된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2009년 이전 연도에 귀속되는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외환평가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규정 취지가 몰각된다는 점에서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그 금액이 부수(-)로 산출되는 경우에도 부수(-) 금액 그대로 기타영업수익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반영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¹⁰⁾

2010년 이후 연도에 귀속되는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의 경우 대법원¹¹⁾은 2010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이나 2011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에 해당하여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포함된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2010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에는 ‘외환평가익’과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2011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는 종전의 ‘외환매매익’ 대신 ‘외환(파생상품 등은 제외한다) 매매손익(가목)과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나목)’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을 정하였는데 이는 금융·보험업자의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과 외환매매손익 등은 서로 통산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하였다. 또한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을 2010년과 2011년 개정 각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으로 보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포함된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하지 않고 그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면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실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세자에게 과중한 교육세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도 하였다.

2015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는 명시적으로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이 포함된다고 규정하였다. 대법원¹²⁾은 이러한 개정이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에 대한 과세를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규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다. 시사점

통화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에

10) 대법원 2021.9.16. 선고 2017두68813.

11) 대법원 2021.9.9. 선고 2017두68820, 대법원 2021.9.16. 선고 2017두68813, 대법원 2021.9.16. 선고 2017두67186.

12) 대법원 2021.9.9. 선고 2017두68820, 대법원 2021.9.16. 선고 2017두68813, 대법원 2021.9.16. 선고 2017두67186.

오랜 시간 다툼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도 여러 차례 개정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과 관련된 법원 판결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화파생상품을 외화현물과 함께 외환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매매익은 과세기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매출금액(또는 이익)에서 총매입금액(또는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판시하고 있어 수익과 비용을 통산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기초상품의 가격 변동위험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파생상품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볼 때 외환의 범위에 기초상품인 외화뿐만 아니라 외화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초상품인 외화와 관련한 손익과 외화파생상품의 손익을 통산하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둘째, 과세기간별로 통화파생상품의 평가이익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 대법원¹³⁾은 2009년 이전 연도에 귀속되는 통화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시행령에서 외환 평가익을 명백하게 제외하고 있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다른 손익항목과 통산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연도에 귀속되는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에 포함되거나, 파생상품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으로 보아 과세표준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¹⁴⁾ 통화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미실현손익으로 거래손익으로 실현되기 전의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세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거래손익과 평가손익을 구분하여 어느 하나만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평가손익이 미실현손익으로 이후 거래손익으로 실현되는 성격의 금액이라면 거래손익과 평가손익은 통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비록 2009년 이전 연도에 귀속되는 평가손익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나 통화파생상품의 평가손익과 거래손익은 서로 통산하여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통화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고등법원 판결¹⁵⁾에서 일부 통화파생상품이 기타영업수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대법원 판결¹⁶⁾에서는 기타영업수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통화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기타영업수익으로 보게 되면 이익과 손실의 통산을 하지 못하고 이익만 과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익만 과세하고 손실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납세자에게 과중한 납세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다. 기타영업수익으로 보지 않고 거래손익과 함께 통산하여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한다.

13) 대법원 2021.9.16. 선고 2017두68813.

14) 대법원 2021.9.9. 선고 2017두68820.

15) 서울고등법원 2017.8.30. 선고 2017누32946, 서울고등법원 2017.8.30. 선고 2017누34928.

16) 대법원 2021.9.9. 선고 2017두68820, 대법원 2021.9.16. 선고 2017두68813, 대법원 2021.9.16. 선고 2017두67186.

2. 겸영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가. 관련 규정

최근 교육세와 관련된 판례에서 통화과생상품의 평가손익에 대한 사례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겸영사업과 관련된 사례이다.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별표]에서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열거되지 않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납세의무의 여부가 쟁점이다. 최근의 개정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별표] 개정 과정

2009년 3분기~2016년	2017년 이후
증권회사, 선물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한국수출입은행을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보험업자에 추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동법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 포함)를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보험업자에 추가
[법률 제9262호, 2008.12.26.]	[법률 제14380호, 2016.12.20.]

2009년 시행된 「교육세법」(2008.12.26. 법률 제9262호)에서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중에서 차별적으로 교육세가 과세된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금융기관들을 납세의무자에 포함하였다. 이로 인하여 증권회사, 선물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한국수출입은행이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보험업자에 추가되었다. 2017년 이후부터는 법 개정(2016.12.20. 법률 제14380호)을 통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추가하여 납세의무자를 확대하였다.

나. 법원의 판단

금융·보험업자의 겸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대한 사례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보험대리점 수수료와 관련된 사례와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대한 사례로 구분될 수 있다.

보험대리점 수수료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수수료 등의 수익이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표에서 정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별표]는 ‘금융·보험업자’를 정의하면서 ‘금융·보험업자’에 보험대리점 업무를 경영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대리점을 경영하는 자의 지위에서 얻은 수수료 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¹⁷⁾

17) 대법원 2021.2.25. 선고 2020두54098, 서울고등법원 2020.9.9. 선고 2019누68055, 서울고등법원 2020.

신용카드업무와 관련된 수익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구 「교육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2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3조 제1호와 [별표]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었다. 신용카드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지 않았을 당시 은행이 신용카드업자를 흡수·합병하여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신용카드업에서 생긴 은행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측면에 반하므로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익 부분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¹⁸⁾

다. 시사점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별표]에서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사례를 분석한 결과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열거주의에 따라 규정된 탓에 열거되지 않은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겸영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법원 판결의 주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세 납세의무자를 형식적인 법률상의 지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와 수익금액의 원천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겸영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교육세법」상 열거된 납세의무자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익의 원천이 어느 사업에서 나온 것인지를 중요하게 판단하였다. 즉, 열거되지 않은 납세의무자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수익을 얻은 것이라면 「교육세법」상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형식적인 요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수익금액이 어떠한 영업을 통하여 얻은 것인지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겸영 여부에 따라 과세를 달리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열거되지 않은 유사 금융·보험업자의 수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열거된 금융·보험업자가 단순히 유사 금융·보험업자의 영업을 겸영하였다는 이유로 교육세를 과세한다면 조세공평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겸영 여부에 따라 과세에 차별을 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

3. 대출채권 매각손익

가. 관련 규정

대출채권 매각손익과 관련된 사례는 대손충당금이 설정된 대출채권의 매각시 발생하는 매각손익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내부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것이다. 대출채권 매각손익과 관련된 규정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이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자산과 부채의

10.23. 선고 2019누67519.

18)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8591,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10013.

평가 또는 수익과 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 중 내부이익에 해당하는 수익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의 최근 개정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개정 과정

2009년 이전	2010년 이후
2. 내부이익	2.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대통령령 제22046호, 2010. 2. 18.]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20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기 이전)에서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수익금액으로 내부이익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이익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 2010년부터 내부이익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내부이익을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유형별로 열거하였다. 열거된 규정에서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었다.

나. 법원의 판단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20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어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명확하게 제외하기 이전에도 법원은 해당 수익을 과세표준에서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¹⁹⁾은 대손충당금이 설정된 부실대출채권을 그 원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매각하게 되는 경우

19)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11078,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두12952,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두13030.

발생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다하게 설정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인식하는 수익으로서 내부이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출채권매각이익과 유사한 논리로 지분법평가이익도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지분법을 적용하여 투자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인식하는 수익이므로 내부이익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다.²⁰⁾

다. 시사점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내부이익은 2010년 개정되기 전까지 내부이익으로만 규정되어 있었다. 현재로서는 내부이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2009년 이전까지는 내부이익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내부이익의 범위에 대출채권의 매각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쟁송으로 이어졌다. 대출채권 매각이익에 대한 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내부이익 중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채권의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은 명확하게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09년 이전 내부이익으로만 규정되어 있던 시기에서도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일부 하급심²¹⁾에서 대출채권 매각이익이 대출업무와 관련된 수익이라는 측면에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입장도 있으나 상급심에서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출채권을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매각시 대출채권 매각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대손충당금의 과다설정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대외거래가 아닌 내부적인 대손처리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대출채권 매각이익에 대하여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실질적인 영업수익을 얻은 것이라고 보기에 어렵다. 부실 대출채권의 매각시 가액이 대손충당금이 설정된 이후의 장부가액 보다 크므로 매각이익이 발생하였지만, 대손충당금 설정 전의 원금보다는 작으므로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둘째, 지분법 평가이익의 경우에도 대출채권 매각이익과 동일한 논리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분법 평가이익도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투자주식을 평가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내부이익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²²⁾ 대출채권 매각이익이나 지분법 평가이익 모두 대외거래 없이 내부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20)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11078.

21) 서울행정법원 2010.1.7. 선고 2009구합36569.

22)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11078.

4. 기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

가. 관련 규정

기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과 관련된 사례는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지급보험금과 관련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으로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지급보험금이 있는데 그 범위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멸된 책임준비금의 범위에 대한 사례이다.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의 최근 개정내용은 <표 8>과 같다.

<표 8>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개정 과정

2009년 이전	2010년 이후
2.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 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출재보험료(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관계되는 출재보험료 제외)의 합계액. 다만, 당기중에 만기·사망·해약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에 대한 계약소멸시의 책임준비금해당액을 당기에 한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	2.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 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출재보험료(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관계되는 출재보험료 제외)의 합계액. 다만, 당기 중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당기에 한정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 가.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 나. 사고 등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으로서 보험료 산출기초에 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로만 구성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대통령령 제22046호, 2010. 2. 18.]

기존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기 이전)에서는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저축성보험의 지급보험금은 보험료에서 공제되고 있으나 보장성보험의 지급보험금은 공제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상품 간에 형평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20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을 통해 보장성보험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조정하여 보장성보험의 지급보험금 중 일부를 보험료에서 공제하도록 하였다. 또한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보험에 대한 책임준비금’에서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으로 개정하였다. 이는 보험상품의 발달로 계약의 소멸 없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이 확대됨에 따라 계약소멸이 없더라도 책임준비금이 소멸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것이다.²³⁾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²⁴⁾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그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당기 중에 보험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계장부상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한 책임준비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계장부상 기타충당부채로 계상된 책임준비금 상당액은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어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이 정한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 시사점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는 책임준비금을 보험료 수익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는 모든 책임준비금을 보험료 수익에서 공제하도록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만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멸된 책임준비금의 범위를 두고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에 이견을 보인 사례가 있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 보험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책임준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²⁵⁾ 법원은 책임준비금을 보험료에서 공제하도록 한 것은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을 위한 재원 마련의 목적이므로 조세정책적인 배려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의 사유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공제하는 이유 역시도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된 경우 책임준비금에 대한 비과세를 그대로 유지할 조세정책상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²⁶⁾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의 경우 지급 이후 보험계약이 유지되어 계약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하여 책임준비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보험계약이 유지되어도 보험금의 실제 지급에 의한 책임준비금의 감소는 당연히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3) 대법원 2020.9.3. 선고 2017두30290.

24) 대법원 2020.9.3. 선고 2017두30290.

25) 서울행정법원 2021.5.25. 선고 2019구합75259.

26) 대법원 2020.9.3. 선고 2017두30290, 서울행정법원 2021.5.25. 선고 2019구합75259.

둘째,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고 소멸한 책임준비금은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보험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책임준비금을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한 사례에서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된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므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경우 책임준비금 계정을 충당부채 계정으로 대체한 것이므로 보험금의 지급에 의한 책임준비금의 소멸이라고 보기에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계정대체에 불과한 책임준비금의 감소는 교육세 과세표준인 보험료 수익에서 공제하는 책임준비금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5. 기타 과세표준에서 포함되는 수익

기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의 대표적인 사례는 자동화기기 수수료와 관련된 것이다. 은행 고객이 자동화기기를 이용함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인지 여부를 다룬 사례이다.

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²⁷⁾은 자동화기기 수수료는 은행의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자동화기기 사업자에게 분배·정산하는 수수료는 별도의 비용이므로 은행이 고객의 계좌에서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추심한 금액 전체가 은행의 수입금액이라는 입장이다. 대법원 원심의 요지를 인용하면서 자동화기기 사업자는 은행에게 자동화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 서비스를 자동화기기 사업자는 기계적으로 보조할 뿐이라고 하였다.

나. 시사점

자동화기기 수수료와 관련된 사례에서는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은행의 수입금액 전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것이다. 고객에게 받은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자동화기기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이견이 있었다.

법원²⁸⁾은 자동화기기 이용자가 지급하는 수수료는 금융기관에게 귀속되는 수익이라고 판단하였다.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수익을 이후 자동화기기 설치사업자에게 분배·정산하는 경우에도 거래 이용의 당사자인 은행에게 귀속되는 수익이라고 하였다. 자동화기기 사업자는 자동화기기의 설치와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 자동화기기

27)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6두51948, 대법원 2017.1.12. 선고 2016두55100.

28) 서울고등법원 2016.10.5. 선고 2016누39773, 서울행정법원 2016.4.29. 선고 2016구합50426.

수수료가 금융업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동화기기 수수료와 같이 수익만 과세하고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 일부 교육세 과세표준의 산정방식은 문제가 있다. 수익에만 과세하는 현행 방식은 정재현(2013)의 주장과 같이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가중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교육세 관련 판례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수집된 교육세 관련 판례는 모두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과 관련된 사례로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과 관련된 사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외에 겸영 사업, 대출채권 매각 손익 기타 과세표준 관련 사례의 순으로 수집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원은 2009년 이전 연도에 귀속되는 평가손익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나 이후 연도에 귀속되는 통화파생상품의 평가손익과 거래손익은 서로 통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또한 통화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대법원에서는 2009년 이전 연도에 귀속되는 평가손익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나 통화파생상품의 평가손익과 거래손익은 서로 통산하여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법원은 교육세 납세의무자를 형식적인 법률상의 지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와 수익 금액의 원천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겸영 여부에 따라 과세를 달리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형식적인 요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수익금액이 어떠한 영업을 통하여 얻은 것인지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법원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내부이익 중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채권의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명확하게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외거래가 아닌 내부적인 대손처리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대출채권 매각이익에 대하여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넷째, 법원은 보험계약이 유지되어도 보험금의 실제 지급에 의한 책임준비금의 감소는 보험료 수익에서 공제되는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반대로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고 소멸한 책임준비금은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단순한 계정 대체에 불과한 책임준비금의 감소는 교육세 과세표준인 보험료 수익에서 공제하는 책임준비금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다섯째, 법원은 자동화기기 이용자가 지급하는 수수료는 금융기관에게 귀속되는 수익이라고 판단하였다. 자동화기기 수수료와 같이 이 수익만 과세하고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 교육세 과세표준의 산정방식은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가중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본 연구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된 교육세 판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판례들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제외된 판례들에 의하여 주제의 빈도가 달라질 수 있다.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교육세와 관련한 최근의 사례를 검토하여 분석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이만우 · 전형준 · 박기범. 2006. “금융 · 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7권 제2호 : 35-55.
- 이용호 · 박용일 · 전형준. 2006. “금융산업에 대한 교육세 부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3권 제3호 : 191-213.
- 전병욱. 2014. “금융기관에 대한 교육세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제31권 제4호 : 275-296.
- 전병욱. 2017. “금융기관의 통화과생상품평가손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 여부 - 2016.12.9. 선고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제18권 제6호 : 217-239.
- 정재현. 2013. “교육세 납세의무와 과세표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금융 · 보험업을 중심으로”. 조세연구 제13권 제1집 : 179-204.
- 정재현 · 최기호. 2012. “금융세제 관련 판례 동향”. 세무학연구 제29권 제2호 : 9-35.

Trends in Precedents Related to the Education Tax of Financiers and Insurers

Jae-Hyun Jung*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rends in precedents related to education tax from 2011 to 2021. All of the collected precedents related to education tax are related to profits, the base of education tax for financiers and insurers, and the precedents related to gains and losses on valuation of currency derivatives accounted for the largest proportion, followed by in the order of precedents pertaining to concurrent businesses, gains or losses from the sale of non-performing loans, and other tax bas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First, the court excluded gains and losses on valuation corresponding to the years prior to 2009 from the tax base, while summing up gains and losses on valuation of currency derivatives and on derivative transactions corresponding to 2009 and subsequent years to calculate the tax base. It was also judged that gains and losses on valuation of currency derivatives did not fall under the category of other operating income.

Second, the court judged education tax obligators according to their actual work and source of income, and not their formal legal status. It is regarded that different taxation based on whether concurrent businesses are being operated is against the principle of equity in taxation.

Third, the court stated that among internal profits excluded from the tax base, the amounts equivalent to the loss of bad debts and allowances for bad debts out of gains from the sales or redemption of loans were not clearly to be considered for the tax base.

Fourth, the court judged that although an insurance contract is maintained, the decrease in liability reserve due to actual insurance payment is included in the extinguished liability reserve deducted from premium income. Conversely, the extinguished liability reserve from which insurance money has not actually been paid is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deductible liability reserve.

Fifth, the court judged that service fees paid by ATM users is a profit that belongs to a financial institution.

〈Key words〉 Education Tax, Financiers and Insurers, Trends in Precedents

* Associate Professor, Dong-A University, jhjung@dau.ac.kr